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6월 8일, 포항시장
- 2) 회부일자 : 2026년 6월 8일
- 3) 상정일자

○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6. 18.)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신정희 재정관리과장)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령」(2025. 12. 9. 공포)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2025. 12. 10. 시행) 개정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2024. 11.)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금고지정 심의안건에 대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 나.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내용 신설(안 제7조제5항)
- 다. 금고 약정 금리 공개 및 공개 방법 신설(안 제8조제5항)

- 라. 금고의 협력사업비 집행내역 공시 범위 개정(안 제11조제2항)
- 마.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장관 보고사항 신설
(안 제11조제3항)
- 바. 대출 및 예금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평가 방법 개선(안 별표)
 - 금고 지정 평가기준의 다른 평가항목 순위 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 규정 삭제
- 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변경(안 별표)
- 아. 금고지정 금융기관별 심의표 변경(안 별지서식)

3)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는 포항시 금고지정시 지정결과만 공개하였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한 금융기관 순위 및 약정 금리를 공개토록하여 금고지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대외 협력사업비 또한 세입처리하고 예산 편성내역을 공개토록 하여 금고지정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자치단체 금고금리가 일괄 공개된만큼 향후 금고지정시 포항시가 불리한 약정을 맺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 후 약정금리 등 금고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